

종합감사 결과 및 조치계획

(기관명: 서울지방노동위원회)

2019. 3.



【 순 서 】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대상기관	1
2. 감사범위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중점사항	1
II. 감사대상 현황	2
III. 감사결과	3
1. 총평	3
2. 지적사항 총괄	3
3. 분야별 지적사항	3

I. 감사실시 개요

1. 감사대상기관: 서울지방노동위원회

2. 감사범위: '16. 4. 9. 이후 노동위원회 업무 전반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기 간: '19. 2. 18. ~ 2. 22.(5일간)

○ 인 원: 감사담당관 외 4명

4. 감사중점 사항

[일반관리 분야]

○ 직원 복무, 회의수당 등 예산집행의 적정여부

○ 위원회 구성, 사건배정의 적정여부

[조정분야]

○ 노동쟁의 조정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조정불성립 사업장 사후관리 여부

[심판·차별시정·복수노조분야]

○ 심판업무 처리 적정여부

○ 근로자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운영 적정여부

○ 구제명령 이행여부 확인, 이행강제금 부과업무의 적정여부 등

II. 감사대상 현황

○ (행정대상) 관할 지역은 서울시 전체로, 사업장 437,391개소 (전국의 22.4%), 근로자수 4,389,417명(전국의 25.3%)

○ (조정업무) 조정사건은 증가 추세*이며, '18년 처리한 131건 중 77건이 조정성립(성립률 58.8%)되어 전국평균(49.0%) 보다 높음

* 처리/조정성립(성립률): '16년 95/63(66.3%)→'17년 106/67(63.2%)→'18년 131/77(58.8%)

○ (심판업무) 심판사건도 증가 추세*이며, '18년 접수된 3,533건 중 3,101건 처리(처리율 87.7%)

- 인정률(12.5%)은 전국 평균(13.1%)보다 낮고, 화해·취하율(67.8%)은 전국평균(62.9%)보다 높음

* 접수건수: '16년 3,162건 → '17년 3,287건 → '18년 3,533건

○ (차별시정업무) 차별시정사건도 증가 추세*이며, '18년 접수된 49건 중 41건 처리(처리율 83.7%)

- 내역은 조정·중재 15건, 인정 6건, 기각 6건, 각하 2건, 취하 12건

* 접수건수: '16년 24건 → '17년 44건→ '18년 49건

○ (복수노조업무) '18년 중 69건 접수·처리(인정 34, 기각 9 등)

- 내역은 교섭요구 사실 및 확정 공고 관련 이의신청(34건), 과반수 노조 관련 이의신청(12건),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(23건)임

○ (직원현황) 정원 62명 / 현원 58명(충원율 93.5%)

○ (기관평가) '18년 A등급으로 위원회 중 3위

Ⅲ. 감사결과

1. 총 평

- 복무관리, 이행강제금 미납사업장 체납처분 업무 등이 다소 미흡
- 조정분야는 조정불성립 및 행정지도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 노사 교섭상황 파악 등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
- 심판분야는 심판사건 일정·사건처리결과 통보,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업무 등이 미흡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: 건, 천원, 명)

총 건수	합 계		변상 (인원)	징계 (인원)	시정(금액)			경고 · 주의 (인원)	개선	권고	통보	고발 (인원)	모범 사례 (인원)
	신분상 조치 인원	재정상 조치 금액			소계	회수 · 추급	기타						
11	10	12	-	-	5 (12)	1 (12)	4	5 (10)	1	-	-	-	-

3. 분야별 지적사항

① 공무원 근무사항(유연근무제) 관리 소홀(시정)

- (위반내용)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면서 복무관리시스템에 출·퇴근 시간 미등록(13명)
- (조치사항) 전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 교육 실시 후 보고

② 공무원 근무사항(당직) 관리 소홀(시정)

- (위반내용) 당직근무를 대체하면서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는 등 당직업무 소홀(8명)
- (조치사항) 전 직원에 대해 복무관리 교육 실시 후 보고

③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(회수)

- (위반내용) 시간외 근무자에 대하여 특근매식비를 중복 지급(2건)
- (조치사항) 중복 지급한 특근매식비 12,000원 '회수' 조치

④ 체납처분 관련 업무 소홀(시정)

- (위반내용) 이행강제금 미납 사업장에 대한 재산조회, 불납결손 처분 대상에 대한 결손처분 미실시 등 체납처분 관련 업무 소홀 (결손처분 대상 17개소 등)
- (조치사항) 해당 건에 대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조치

⑤ 노동쟁의 조정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조정결과 등을 지방관서에 통보하지 않고, 조정불성립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미실시 등 업무처리 소홀(44건)
- (조치사항)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3명 '주의'

⑥ 심판사건 업무처리 소홀(주의)

- (위반내용) 심문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심문일정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함에도 3일~7일 지연 통지(7건), 사건 처리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통보(11건)
- (조치사항)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'주의'
* 사건처리결과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미통보한 건은 업무개선 병행

⑦ 이행강제금 부과업무 소홀(경고, 주의)

- (위반내용) 구제명령 이행 여부 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소홀
①구제명령 기한이 지나면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,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35일~97일 지연 확인(6건)

- ②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위한 심판위원회를 13일~82일 지연 소집(20건)
- ③ 이행강제금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3 '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'보다 과소 결정(1건)
- ④ 매년 2회씩,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에도 최초 1년 중에 1회만 부과하는 등 부과기한 도과(3건)
- (조치사항) 이행강제금 부과기한을 도과한 ○○○ 등 2명 '경고', 그 외 이행강제금 업무를 3건 이상 소홀히 한 ○○○ 등 2명 '주의'

8]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 사업장 고발업무 소홀(경고, 시정)

- (위반내용)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고발을 위한 심판위원회 개최 등 고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미진행(1건)
 - 심판위원회가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고발(1건), 고발 지연(12건)
- (조치사항) 고발결정에도 미고발하거나 고발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○○○ '경고', 미고발 2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(시정)

9] 근로기준법 위반(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) 고발사건 처리 소홀(경고, 서울강남지청)

- (위반내용) 지방고용노동관서는 노동위원회로부터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사용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범죄사건부 등재, 사건 수사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(1건)
 - *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서울강남지청 1건 통보
- (조치사항) 범죄사건부 등재, 사건 수사 등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○○○ '경고'